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631,642,481	48,949,274
일반회계		1,433,640,609	43,009,218
특별회계		198,001,872	5,940,056
	공기업특별회계	149,602,456	4,488,07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898,224	1,586,94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306,577	2,499,19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3,397,655	401,930
	기타특별회계	48,399,416	1,451,982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870	56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740,654	472,220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724,542	111,736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17,839,485	535,185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11,092,865	332,786

제 2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4년도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2024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48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4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제 9 조 (간주처리)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